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법개정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○	-	○
2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
3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
4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-
5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투자신탁(H)(주식-파생형)	-	○	○
6	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파생형)	-	-	○
7	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○	○
8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-
9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
10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○	○
11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7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○	○
12	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
13	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	-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2) 고난도 관련 문구 신설
- 3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1년 11월 02일 (화)

4. 변경 내용:

- 1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5. “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”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	5. “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”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</u> 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 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

		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15조(자산운용 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6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</u>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<u>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④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* "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"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	* "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"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

	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.	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.
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이 투자신탁은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[미래에셋 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 혼합자산 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] 이 투자신탁은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	[미래에셋 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 혼합자산 모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] 이 투자신탁은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가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이 투자신탁은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</u>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
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1) 투자대상	[집합투자증권] 다만,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합니다.	[집합투자증권] 다만,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</u>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는 자산총액의 50% 초과로 합니다.
나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(2) 투자제한	[집합투자증권] 다만,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가 <u>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</u> 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	[집합투자증권] 다만, 사모투자재간접 집합투자기구가 <u>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</u> (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	<u><신설></u>	[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]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
다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(운 용전략 및 투자방 침)	<p>① 이 투자신탁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% 초과하 여 투자합니다.</p> <p>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 위 험조정 수익률,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 자 유니버스를 구성한 후에 정량 및 정성 평가, 실사 등을 통해 투자 유망 집합투자 기구를 선별합니다. 최종적으로 매크로 분 석 등을 기반으로 한 전략별 투자 배분과 리스크관리 원칙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 성을 통해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선정 및 투자비중이 결정됩니다.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제 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 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내 등록된 외국집합투 자기구에 자산총액의 50% 초과하여 투자 합니다.</p> <p>②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 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 위험조정 수익률,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유니 버스를 구성한 후에 정량 및 정성평가, 실 사 등을 통해 투자 유망 집합투자기구를 선별합니다. 최종적으로 매크로 분석 등 을 기반으로 한 전략별 투자 배분과 리스 크관리 원칙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선정 및 투 자비중이 결정됩니다.</p>

2) 고난도 관련 문구 신설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<u><신설></u>	9. 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”이라 함은 법 시행 령 제 2 조제 7 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 55 조 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u><신설></u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.

4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02	19.73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38	6.53
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(H)(주식-파생형)	2	3	-	13.86
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.0 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(UH)(주식-파생형)	2	3	-	14.77
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2.43	2.65
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96	7.34
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5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3	9.95	10.59
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 7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3.14	14.07

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5	5	3.56	2.85
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1	1	33.73	33.26
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 40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	3	3	11.88	12.08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